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9
------------------	-------

발의년월일 : 2017. 9.

발의자 : 김윤정, 김영미, 김효식,
문정애,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전승학, 차재홍

1. 제안이유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공교육 혁신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안 제4조)
- 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등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6조)
- 마.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8조)

바.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조치 : 필요

※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가. 소요예산 : 500,000천원(2018년 예산에 편성 예정)

나. 산출기준

-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자치구가 대응 사업비(5억원) 확보를 전제로 신청 가능
- 구체적인 예산 산출은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를 바탕으로 작성

5. 입법예고 : 2017. 9.18. ~ 9. 22.(제출된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해당 연령의 청소년을 말한다.
2.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마포 구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마포구 관내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 사업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
3.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4. 지역연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5. 지역특화 사업
6.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운영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마포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마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교장
2. 마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3. 마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4.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혁신 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협의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

격요건 등의 사유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 3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2명 이상의 합의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협의회에 소관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2. 사업 모니터링, 컨설팅 및 실무 지원
3.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4.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필요하고 인정한 업무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마포구 및 서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 및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실무협의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 담당 공무원, 마포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혁신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 ④ 실무협의회에 소관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의 소관 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⑤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회의 등)** ①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⑤ 그 밖에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협의회 등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